
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

2009. 9



행정안전부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	1
III. 위원회 정비 방안	2
1. 현행 위원회의 대대적 통·폐합	2
2. 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가이드라인 준수	3
IV. 추진 일정 및 행정 사항	4

I. 추진 배경

- 자치단체 내에 유사·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,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이 증가
 - 지난해 지방조직개편시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으나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정비에 어려움
-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(4.1, 시행:10.2)을 계기로 대대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강구
 - < 참 고 > 개정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조문

II.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(‘08. 12월 현재)

- 자치단체 위원회는 16,918개로, ‘07. 12월 16,586개 대비 332개(2%) 증가
 - (시·도) 1,758개, ‘07. 12 1,745개 대비 13개(0.7%) 증가
 - (시·군·구) 15,160개, ‘07. 12 14,841개 대비 319개(2.1%) 증가
 - ※ 16,918개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9,502개(56.1%), 심의·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12,785개(75.6%)
-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56,587회(연 평균 3.3회)로 ‘07. 12월 57,572회 대비 694회(1.2%) 감소
 - 1년 동안 2회 미만 개최된 위원회 수도 10,787회(19%)를 차지

Ⅲ. 위원회 정비 방안

1 현행 위원회의 대대적 통·폐합

◀ 기본 방향 ▶

- ◇ 자치단체 여건·상황에 맞게 추진하되,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,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·폐합
 - ◇ 신설을 억제하고 필요시 유사 위원회를 보완하여 운영
- ⇒ 최소 시·도 15%, 시·군·구 10% 이상 통·폐합을 추진

□ (1단계)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, 우선 폐지

-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, 회의 실적이 저조(특히, 최근 3년간)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 대상
 -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 등으로 처리

□ (2단계)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의 통·폐합 / 통합 운영

-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,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등 대상
 - 순수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

□ (3단계)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

- 법령 등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데,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 대상

◀ 기본 방향 ▶

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, 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

□ 위원회의 설치

- 전문적 지식·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고,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 위원회를 설치
 -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 금지
- 법령 등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설을 지양하고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
 - 존속기한(최대 5년)을 명시하여 설치목적 달성시 자동 폐지: 일몰제
 - 사전 TF로 먼저 운영한 뒤, 운영실적을 토대로 설치여부 재검토

< 내부 행정 절차의 준수 >

- ◆ 업무소관 부서장은 법령상 위원회를 포함, 모든 위원회 설치(기한 연장 포함) 및 통·폐합 시 위원회 총괄 부서장과 반드시 사전협의

□ 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수는 위원회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설정
- 전문적 지식·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·위촉하되 성별·지역·직능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
 - 공무원은 지나친 상위직급 책정을 지양하고, 민간위원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

□ 위원회의 운영

-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(Pool)을 마련
 - 시·도는 시·군·구를 포괄하는 인력뱅크 운영, 지원
- 회의 일정과 안건은 긴급 또는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 최대한 개최 7일 전까지 통보
 - 회의 또한 경미·긴급,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능한 출석회의(화상회의 포함)로 진행
 - 관계 법령·조례에서 규정한 심의기한과 처리절차 등 준수, 심의 기준 공개, 이해관계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 도모

IV. 추진 일정 및 행정 사항

- 자치단체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: 10 ~ 11월
 - 정비계획을 우선 우리부로 제출(시·군·구 계획 시·도 취합) : 11월말
- 자치단체별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: '09. 10 ~ '10. 3월
-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과약 : '10. 3월

동 지침의 적용 시기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0. 2 부터임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동법 시행령

제80조 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 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 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부칙 제3조(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. 다만,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·제80조의2·제80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